

복지정보! 원 클릭~

- ◆ 2021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1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3
- ◆ 의료비 지원 -----5
- ◆ 기타 저소득층 지원 -----6
-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7
- ◆ 노인복지 지원 -----8
- ◆ 장애인복지 지원 -----9
- ◆ 임신, 출산, 보육, 아동, 청소년 지원 -----12

□ 2021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8,365,793
생계급여(중위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2,509,738
의료급여(중위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3,346,317
주거급여(중위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3,764,607
교육급여(중위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4,182,897
한부모가족(중위52%)	-	1,605,801	2,071,654	2,535,671	2,993,834	3,446,874	3,898,543	4,350,212
한부모가족(중위60%)	-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4,498,319	5,019,475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유형	지원내용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이하이지만 고정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 4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438,145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차상위자활	자활사업 연계	
	차상위계층확인	전기·통신요금 할인 등	

□ 한부모가족

유형	지원내용	소득기준
한부모가족	만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 교통비, 자녀교육비 지원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증명서만 발급 가능	중위소득 53%~60% 이하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

□ 2021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연번	보 장 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기준	필요서류								
1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가구원별 최대 지원 금액(소득 등에 따라 차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1인가구</td> <td>2인가구</td> <td>3인가구</td> <td>4인가구</td> </tr> <tr> <td>548,349원</td> <td>926,424원</td> <td>1,195,185원</td> <td>1,462,887원</td> </tr> </table>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48,349원	926,424원	1,195,185원	1,462,887원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주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미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주거관련서류 ▶ 소득관련서류 ▶ 통장사본 ▶ 차량등록증(차량소유자) ▶ 지출실태조사서(생계, 의료급여 신청 시 필수) ▶ 근로능력 관련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및 2개월 진료기록지(정신신경계는3개월) ▶ 질병자 : 일반 진단서(3개월이상 치료 필요명시) ▶ 부양의무자 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단절소명서(소유하고 있는 통장의 최근 1년 통장 거래내역서 포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48,349원	926,424원	1,195,185원	1,462,887원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 부담으로 이용										
주거급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를 지원 ※가구원별 최대 지원금액(임차료 등에 따라 차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1인가구</td> <td>2인가구</td> <td>3인가구</td> <td>4인가구</td> </tr> <tr> <td>239,000원</td> <td>268,000원</td> <td>320,000원</td> <td>371,000원</td> </tr> </table>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39,000원	268,000원	320,000원	371,000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39,000원	268,000원	320,000원	371,000원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2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 4만원 지원	만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주거관련서류 ▶ 소득관련서류 ▶ 통장사본 ▶ 차량등록증 ▶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진단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만 해당) ▶ 6개월 통장거래내역서(한부모가족만 해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만18세 미만 아동 또는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적용									
	차상위자활	자활사업 연계(근로가능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계층확인서 증명서 발급 ▶전기·통신요금 할인 등										
3	한부모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2세 미만 아동양육비 : 월200천원 ▶ 생계급여수급자 아동양육비 : 월100천원 ▶ 자녀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등학생 부교재비 : 134,000원(연1회) - 중·고등학생 부교재비 : 212,000원(연1회) - 중·고등학생 교통비 : 40,000원(분기별) ▶ 고교생 :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연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방연료비 : 80,000원 - 난월동대책비 : 100,000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연번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필요서류	비고	
1	해산급여	출산 시 해산 비용 지원 영아 1인당 700,000원 (쌍둥이 출산 시 1,400,000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해산급여지원신청서, ▶ 출산증명서(출생신고 완료자 구비서류 없음), ▶ 사산 시는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	▶관할동 신청	
2	장제급여	사망시 장제비용 800,000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장제급여지원신청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신고 완료시 불필요)	▶관할동 신청	
3	정부양곡 할인	양곡(10kg) 2,800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신분증	▶관할동 신청 ▶생계비 받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수급비에서 상계 가능 ▶신청 : 매월 1~10일 ▶배송 : 신청 다음달 5~15일	
		양곡(10kg) 11,900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신분증		
4	중량제봉투 지급	음식물 및 일반 중량제봉투 지급 (월 1회)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신분증	▶관할동 신청 ▶해당 월 15일 이후 수령 가능	
5	요 금 감 면	도시가스	도시가스요금 감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정도가심한장애인	▶본인신청: 신분증 ▶대리신청: 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도장	▶인천도시가스(1600-0002) 방문신청 또는 관할동 신청
		전기요금	전기요금 감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정도가심한장애인	▶신분증	▶한국전력공사 전화신청(123) 또는 관할동 신청
		TV수신료	수신료 면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시·청각장애인	▶신분증	▶아파트 관리사무소 신청 ▶문의: 1588-1801(tv수신료콜센터)
		상하수도	상하수도 요금 면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등 관련증명서 ▶신분증	▶인천수도사업소 중부수도사업소 (032-720-3323) 또는 관할동 신청
		통신요금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장애인	▶수급자 등 관련증명서 ▶신분증	▶통신사 대리점 신청
		기타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면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포함)	▶신분증	▶서류발급 신청 시, 직원에게 면제 대상자임을 고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연번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필요서류	비고
6	문화누리카드	개인별 문화누리카드 발급 (연 10만원 사용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 교육급여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신분증, 위임장(본인 아닐시)	▶행정복지센터 신청 또는 온라인(www.mnuri.kr) 신청 ▶신청기간: 2021.2.1. ~ 11.30. ▶사용기간: 2021.12.31.까지
7	에너지바우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구입 전자바우처 지원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 국민기초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기준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역난방 : 관리비고지서 ▶개별난방 : 도시가스 고지서 (고객번호 기재), 신분증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기간 : 별도고지 ▶사용기간 -여름바우처 7~9월 -겨울바우처 10월~차년도 4월

□ 의료비 지원

연번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필요서류	비고								
1	당뇨환자 소모성 재료비 지원	▶혈당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비용 지원	제1·2형 당뇨병 환자 및 임신중 당뇨병 환자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소모품) ▶세금계산서 ▶신분증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1·2종 구분 없이 60만원 지원(다태아 100만원)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 60일까지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및 출산이 확인된 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 ▶임신, 출산사실 증명서									
3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결핵,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 환자) 및 희귀 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면제, 1종 자격부여, 식대 본인부담 5%로 경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으로 등록된 자	▶산정특례등록신청서 ▶신분증									
4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인천시)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완전틀니, 클라스프부분틀니, 사전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7년 주기로 1회 적용, 중복급여 금지 ▶본인부담금(1종 5%, 2종 15%) 지원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2019.7.1.이후 완전틀니 시술 신청자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시술 완료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인천시 사업으로 관할동 신청								
5	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중구)	▶부분틀니 설치 시 지대치비용 지원 ▶(1인당 2대[상악1대, 하악1대], 1대당 250천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10%제외)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부분틀니 사전등록자 ▶중구에서 2년 이상 거주자	▶신청서 ▶본인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지대치 시술 비용 확인용)	▶시술 완료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 ▶중구사업으로 관할동, 중구청 복지정책과 신청								
6	노인 틀니지원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 시 비용 일부만 본인부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건강보험</td> <td>차상위</td> <td>의료급여1종</td> <td>의료급여2종</td> </tr> <tr> <td>30%</td> <td>5~15%</td> <td>5%</td> <td>15%</td> </tr> </table>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30%	5~15%	5%	15%	▶의료급여수급자 중 -완전틀니 : 만65세이상으로 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차이가 전부 無 -부분틀니 : 만65세이상으로 남은 치아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가능자	▶의료급여틀니대상자등록신청서 ▶신분증	▶의료급여수급자 -관할동에 신청 ▶건강보험대상자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30%	5~15%	5%	15%										
7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 (평생 2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건강보험</td> <td>차상위</td> <td>의료급여1종</td> <td>의료급여2종</td> </tr> <tr> <td>30%</td> <td>10~20%</td> <td>10%</td> <td>20%</td> </tr> </table>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30%	10~20%	10%	20%	▶만65세 이상 부분 무치약환자 (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의료급여치과임플란트대상자 등록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30%	10~20%	10%	20%										
8	가사간병 도우미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한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자격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재판정 절차 통해 1년 단위 연장가능)	▶만65세 미만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중증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의 자녀·손자녀,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신청서 ▶신분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활동지원으로 우선지원								

□ 기타 저소득층 지원

연번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필요서류	비고
1	푸드뱅크	기업 또는 개인에게서 기부받은 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여 지역사회 내 기부문화 정착 및 저소득층 지원 도모	▶1순위: 긴급지원대상자 ▶2순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푸드마켓 신청서 ▶신분증	
2	푸드마켓	기업 또는 개인에게서 기부받은 식품을 식품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원하는 식품을 선택하여 이용(월1회 식품 및 생필품 지원)	▶3순위: 생계·의료급여 탈락자 ▶4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	긴급복지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주소득자 사망·가출·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중한질병 또는 부상 -가구원으로부터의 방임·학대·유기 등 -가정폭력 및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단수·단전·가스단절 등이 1개월 이상 경과 ·건강보험료가 최근 6개월 이상 체납 ·보증금 소진 후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등 간병·보호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고시 사유	▶신청기준(모두 충족)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188,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5,000,000원 이하	▶위기사유 관련 서류 ▶주거 및 재산 관련 서류 ▶금융재산(가구원의 통장 거래내역서 6개월, 통장사본)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완화 운영 (2021. 6. 30.까지) -재산 350,000,000원 -금융재산 7,742,000원 ~ 16,246,000원으로 조정
4	SOS복지 안전벨트 사업	현행법·제도로 지원 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긴급지원 검토 후 기준 초과자에 대해 SOS복지안전벨트 사업으로 연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해소(생계, 의료, 주거비)	▶신청기준(모두 충족) -기준중위소득 85%이하 -재산 188,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10,000,000원 이하	▶위기사유 관련 서류 ▶주거 및 재산 관련 서류 ▶금융재산(가구원의 통장 거래내역서 6개월, 통장사본)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완화 운영 (2021. 6. 30.까지) -재산 350,000,000원 -금융재산 10,000,000원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연번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필요서류	비고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130,000원 ▶매월 25일 지급	지급기준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인천광역시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한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유공자증 또한 유족증 소지자) ※ 사망위로금은 연령 제한 없음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0,000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3	보훈예우수당	▶월 80,000원 ▶매월 25일 지급	지급기준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인천광역시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한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유공자증 또한 유족증 소지자)		
4	전몰군경 유족수당	▶월 100,000원 ▶매월 25일 지급			
5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월100,000원 ▶매월 25일 지급	지급기준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인천광역시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한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유공자증 또한 유족증 소지자)	▶지급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통장사본 ▶신분증	
6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200,000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7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증진수당	▶반기 50,000원 ▶연2회(6/20, 12/20) 지급	지급기준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인천광역시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한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유공자증 또한 유족증 소지자)		

□ 노인복지 지원

연번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필요서류	비고						
1	기초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25일 최대 300,000원 차등지급 ▶선정기준액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단독가구</th> <th>부부가구</th> </tr> </thead> <tbody> <tr> <td>일반 선정기준액</td> <td>1,690천원</td> <td>2,704천원</td> </tr> </tbody> </table>	구 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 선정기준액	1,690천원	2,704천원	만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70%)이하인 어르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기초연금이력관리신청서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차량등록증 ▶신분증 등 	
구 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 선정기준액	1,690천원	2,704천원									
2	휴대전화 요금 감면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11천원 한도)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본인명의 휴대전화 사용자(알뜰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연금수급확인서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사 대리점 ▶고객센터(유선) 						
3	효사랑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세대 이상 거주 가정 500,000원 지원 ▶연1회(추석명절이 속하는 달) 	주민등록상 만70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하여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중구에 함께 5년 이상 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신청인(부양자녀)의 신분증 							
4	효드림복지카드	연1회 8만원의 인천e음카드-인천형 소비쿠폰 발급 및 충전	신청일 현재 인천시 중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75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어르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신청서 ▶신분증 ▶증명서(수급자, 차상위계층) 							
5	어르신 교통우대카드 (단순무임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임승차 교통카드 지급 ▶1회용 무임승차권 발부 없이 전철이용 가능 	주민등록 기준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만65세 이상 어르신(체류자격이 F-5인 외국인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무임카드 신청서 ▶신분증 							
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p>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p> <p>※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p>	<p>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으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자</p> <p>※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 ▶신청시점 장기요양 등급이 없더라도 이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7	대상포진 예방접종	<p><2020.2.~ 연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주민 50,000원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 144,000원 이내 ※범위 초과액은 의료기관에 자체수납 	접종일 현재 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5세(해당년도 12.31이전출생자) 이상 지역주민	<p><지정의료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주민: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차상위,수급자: 선택예방접종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증명서(차상위/수급자) 	<p><보건소 비용청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본인) ▶수급자, 차상위: 증명서 추가 						

□ 장애인복지 지원

연번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필요서류	비고												
1	장애인 등록신청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 등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장애인등록신청서 ▶신분증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교부요청동의서 ▶장애명에 따른 구비서류	장애명에 따른 구비서류는 담당자와 상담												
2	장애인연금	▶근로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만18세~만64세</th> <th>만65세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생계·의료 급여수급자</td> <td>38만 (기초30만/부가8만)</td> <td>38만원 (부가38만)</td> </tr> <tr> <td>주거, 교육, 차상위계층</td> <td>최고 37만원 (기초30만/부가7만)</td> <td>7만원 (부가7만)</td> </tr> <tr> <td>차상위초과</td> <td>4만원 ~ 32만원 (기초30만/부가2만)</td> <td>4만원 (부 4만)</td> </tr> </tbody> </table>	구분	만18세~만64세	만65세 이상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38만 (기초30만/부가8만)	38만원 (부가38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최고 37만원 (기초30만/부가7만)	7만원 (부가7만)	차상위초과	4만원 ~ 32만원 (기초30만/부가2만)	4만원 (부 4만)	만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1,220천원/부부 1,952천원)이하에 해당하는 자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장애인연금이력관리신청서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차량등록증 ▶신분증 등	만65세 이상 시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 신청 필요)
구분	만18세~만64세	만65세 이상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38만 (기초30만/부가8만)	38만원 (부가38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최고 37만원 (기초30만/부가7만)	7만원 (부가7만)															
차상위초과	4만원 ~ 32만원 (기초30만/부가2만)	4만원 (부 4만)															
3	장애수당	▶소득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생계,의료수급자</th> <th>주거, 교육, 차상위계층</th> <th>보장시설수급자 (생계, 의료)</th> </tr> </thead> <tbody> <tr> <td>월4만원</td> <td>월4만원</td> <td>월2만원</td> </tr> </tbody> </table>	생계,의료수급자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 의료)	월4만원	월4만원	월2만원	만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차량등록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							
생계,의료수급자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 의료)															
월4만원	월4만원	월2만원															
4	장애아동수당	▶소득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중증</th> <th>경증</th> </tr> </thead> <tbody> <tr> <td>생계·의료</td> <td>월20만원</td> <td>월10만원</td> </tr> <tr> <td>주거, 교육, 차상위계층</td> <td>월15만원</td> <td>월10만원</td> </tr> <tr> <td>보장시설수급자 (생계,의료)</td> <td>월7만원</td> <td>월2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중증	경증	생계·의료	월20만원	월10만원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월15만원	월10만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의료)	월7만원	월2만원	만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만18세~20세로서 초·중·고·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선택신청 가능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차량등록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	
구분	중증	경증															
생계·의료	월20만원	월10만원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월15만원	월10만원															
보장시설수급자 (생계,의료)	월7만원	월2만원															
5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등록장애인 중 신청자에 한해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가구당 1부, 월 2회)	등록장애인 중 신청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6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매월 14~22만원의 언어, 미술, 놀이치료 등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및 장애가 예견되는 만6세미만의 영유아 ※재학 중은 만20세 미만까지 가능	▶사회서비스이용신청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검사자료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분증													

□ 장애인복지 지원

연번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필요서류	비고
7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 이용 및 참여로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문화관람, 미술음악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 월 44시간, 88시간, 120시간의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제공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지적·자폐)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 정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장애등록현황	
8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에게 안전한 돌봄 지원 및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과 경제활동 참여 증진 ▶취미·여가, 자립준비, 체험활동 등 월44시간 방과후 돌봄 바우처 제공	만12세 이상 만18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재학증명서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 정하는 서류	
9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중 심리 상담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월 16만원의 개인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발달장애인(지적·자폐) ▶6세 미만 발달장애 의심 자녀를 둔 부모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증명서류【발달장애인의 부모(보호자) 확인 가능서류-만6세미만 자녀의 경우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가능】	
10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검사 실비 지원(최대 지원액 10만원) ※조정신청, 이의신청은 불가	▶신규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등록 진단비(검사비)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신분증	
1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 -지적, 자폐, 정신장애 : 40,000원 -기타 일반장애 : 15,000원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생계·의료)는 별도 신청 없이 정액지급(영수증 확인 불요)	▶신규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등록 진단비(검사비)신청서 ▶진단비 영수증 ▶신분증 ※신규 장애인등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정액지급(영수증 확인 불요), 2020.10.1. 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	
12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 금액 내에서 무료 교부(보행차 등 34종 품목) ※지원절차 : 행정복지센터 신청(장애유형, 소득기준)→자격기준 검토(구청) 및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진단(필요 시 의료기관)→상담 및 보조기기 적합성 평가(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교부결정(구청)→보조기기교부(보조기기업체)→교부비용청구(보조기기업체)→검수(구청)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발달, 언어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진단의뢰서	상시신청

□ 장애인복지 지원

연번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필요서류	비고
13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인당 1,000,000원 ※해산급여 중복지원 가능	▶출산한 여성장애인 ※임신 4개월이상 유산(사산) 포함	▶지원신청서 ▶신분증 ▶출생증명서 ▶장애인 명의 통장사본 ▶출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	
14	장애인활동지원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를 1~15등급으로 구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가능)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소득 및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신청서 ▶건강보험증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재학증명서 등 ※장애정도판단 필요자는 추가 필요 -전체: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지체·뇌병변·시각 : 장애유형별 소견서 -지적·자폐 : 임상심리평가보고서	
15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전용면적85㎡ 이하의 공동주택 분양 알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지방세 미과세증명 ▶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주택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상 ▶무허가건물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신분증	모집공고 별도
16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장애인 탑승한 경우에만)를 발급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원	▶장애인 ▶장애인과 공부상 동일거주 보호자 명의의 등록 차량으로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장애인시설 및 단체 명의 자동차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차량등록증 ▶신분증(복지카드) ▶운전면허증	
17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 지원	▶수술비지원 : 7,000천원 범위 내/1인 ▶재활치료비지원: 대상자의 수술일 기준 -수술 후 1년 내: 3,000천원 범위 내/1인 -수술 후 2년 내: 2,500천원 범위 내/1인 -수술 후 3년 내: 2,000천원 범위 내/1인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이며 만39세 이하의 청각장애인으로서 수술대상자 또는 수술자 중 재활 치료 대상자	신규수술 수술지원신청서, 수술가능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사본, 인공달팽이 수술지원 사업 수행계획서 재활치료 재활치료 신청서 및 계획서, 이식수술 확인서(신규 지원자), 건강보험료 사본, 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신청기간 별도공지
18	행복씨앗통장	▶청년 발달장애인의 자립 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매월 15만원 본인저축하면 매월지원금 15만원 적립 [적립금(3년) 1,080만원+이자] ▶3년 후 만기적립금은 자립준비금으로 사용가능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인천시 거주 만16세 이상 만39세 이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이며, 기준중위 소득 100%이하인 가구	▶신분증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부채증명원 ▶각종(가구현황)증빙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기간 별도공지

□ 임신, 출산, 보육, 아동, 청소년 지원

연번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필요서류	비고
1	인천시 I-MOM 출산축하금	I-MOM 출산축하금 100만원(쌍생아 이상은 각각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출생아(모두충족) -2020.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를 인천광역시에 하는 자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 하고 있는 자 -출생일 현재 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신분증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출생아의 부(모) 또는 직계가족 신청
2	중구 출산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둘째아: 100만원 일시금 지급 ▶셋째아: 300만원 일시금 지급 ▶넷째아 이상: 500만원을 지급하되, 최초 신청 시 20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달부터 100만원씩 3개월 분할지급 ※분할지급 기간 중 타 사군·구로 전출 시에는 지원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1.1. 출생아부터(둘째자녀 출생부터 적용) ▶거주요건 :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중구 계속 거주자(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신분증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3	아동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7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84개월 간 월10만원 지급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아동의 국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행방 불명이나 거주불명이 등록된 경우 지급 정지 	만7세 미만 모든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수당 신청서 (출생신고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가능
4	만3~만5세 보육료/유아학비 지원(누리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원 ※ 무상교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제외: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출국일 이후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되며, 자격중지 후 다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중복지원 불가: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 아이돌봄 서비스는 중복지원 불가 ※ 소급지원 불가: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간 이동시 반드시 서비스 변경신청을 해야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지원.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립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3~만5세 유아 (2015.1.1.~2017.12.31.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 임신, 출산, 보육, 아동, 청소년 지원

연번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필요서류	비고																				
5	양육수당	<p>▶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연령(개월)에 따라 월10만원~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양육수당</th> <th colspan="2">장애아동양육수당</th> </tr> <tr> <th>연령</th> <th>금액</th> <th>연령</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0~11개월</td> <td>20만원</td> <td rowspan="3">0~35개월</td> <td rowspan="3">20만원</td> </tr> <tr> <td>12~23개월</td> <td>15만원</td> </tr> <tr> <td>24개월~35개월</td> <td>10만원</td> </tr> <tr> <td>36개월이상 ~86개월미만</td> <td>10만원</td> <td>36개월이상 ~86개월미만</td> <td>10만원</td> </tr> </tbody> </table> <p>※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지원, 그 외 출생아 소급지원 기준 미해당자는 소급지원 불가 ※영유아의 국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 시 지급 정지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기준: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 부터 지원, 16일 이후 신청 시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 지원</p>	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연령	금액	연령	금액	0~11개월	20만원	0~35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개월~35개월	10만원	36개월이상 ~86개월미만	10만원	36개월이상 ~86개월미만	10만원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만0~만6세 영유아	<p>▶출생 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p> <p>▶변경신청 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p>	
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연령	금액	연령	금액																						
0~11개월	20만원	0~35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개월~35개월	10만원																								
36개월이상 ~86개월미만	10만원	36개월이상 ~86개월미만	10만원																						
6	만 0~2세 보육료 지원	<p>▶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17.1.1.이후 출생 영유아 -기본 보육료 지원(0세~만2세)</p> <p>※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변경 기준: 변경 신청일부터 ※2020.3.1.부터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어 기존의 종일반 및 맞춤형 보육료 지원이 폐지,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동일한 기본보육료가 지원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연장보육료가 지원됨.</p>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만2세 아동 (소득재산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p>▶사회보장급여신청서 ▶신분증 ▶각 구비서류(연장형 보육)</p>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a.go.kr) 신청가능																				
7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p>기저귀(월64,000원) 및 조제분유(월86,000원) 구매비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제공 ※ 영아 출생 후 만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신청일 기준 지원)</p>	만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및 다자녀(2인이상), 기준중위 소득 80%이하 장애인 가구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 또는 특정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할 경우, 시설입소영아, 한부모(부자, 조손) 가정영아, 입양가정의 영아에게 지원	<p>▶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신분증 ▶건강보험증사본 ▶소득증빙자료(신청일 기준 직전 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소득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p>																					

□ 임신, 출산, 보육, 아동, 청소년 지원

연번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필요서류	비고																	
8	아이돌봄서비스	<p>▶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지원</p> <p>-시간제 :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 영아</p> <p>-종일제 : 생후 3개월~36개월 영아만 가능</p> <p>-질병감염아동지원: 질병감염 만12세 이하 시설이용 아동</p> <p>※ 소득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가형</th> <th>나형</th> <th>다형</th> </tr> </thead> <tbody> <tr> <td>중위소득기준</td> <td>75%이하</td> <td>120%이하</td> <td>150%이하</td> </tr> </tbody> </table> <p>※시간제는 양육수당 지원아동도 가능,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지원불가</p> <p>※종일제는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시간제 돌봄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p>	유형	가형	나형	다형	중위소득기준	75%이하	120%이하	150%이하	<p>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의 아동 가정</p>	<p>▶사회보장급여신청서</p> <p>▶아이돌봄 이용안내문</p> <p>▶고용임금확인서 등 근로 및 소득관련 증빙서류</p>										
유형	가형	나형	다형																			
중위소득기준	75%이하	120%이하	150%이하																			
9	결식아동 급식지원	<p>급식카드 발급, 도시락 배달 등으로 급식 지원</p>	<p>기준중위소득 52%이하 결식우려 아동</p>	<p>▶신청서 ▶신분증 ▶고용임금확인서 ▶진단서 등</p>																		
10	청소년증 발급	<p>학생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청소년들의 신분확인 수단으로 활용 및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p>	<p>만9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청소년</p>	<p>▶신청서 ▶증명사진 ▶학생증(보호자신분증)</p>																		
1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p>보건위생물품(생리대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월11,000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연 최대132,000원)</p> <p>※1월, 7월에 6개월분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되며, 한 번에 전액사용 가능</p> <p>※카드사별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p> <table border="1"> <thead> <tr> <th>카드사</th> <th>온 라 인</th> <th>오프라인</th> </tr> </thead> <tbody> <tr> <td>BC카드</td> <td>지마켓, 옥션, 먼슬리싱(앱)</td> <td>홈플러스(익스프레스포함), 노브랜드, 이마트트레이더스, CU편의점, PK마켓</td> </tr> <tr> <td>삼성카드</td> <td>삼성카드쇼핑몰</td> <td>GS25편의점,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td> </tr> <tr> <td>롯데카드</td> <td>올마이쇼핑몰</td> <td>홈플러스(익스프레스포함),롯데마트,VIC마켓, CU편의점, 농협하나로마트, GS25편의점</td> </tr> </tbody> </table>	카드사	온 라 인	오프라인	BC카드	지마켓, 옥션, 먼슬리싱(앱)	홈플러스(익스프레스포함), 노브랜드, 이마트트레이더스, CU편의점, PK마켓	삼성카드	삼성카드쇼핑몰	GS25편의점,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롯데카드	올마이쇼핑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포함),롯데마트,VIC마켓, CU편의점, 농협하나로마트, GS25편의점	<p>▶만11세~만18세 이하 자격기준 충족 여성청소년(2002년~2009년생)</p> <p>-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p> <p>-법정차상위계층</p> <p>-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p>	<p>▶사회보장급여신청서</p> <p>▶신분증</p>	<p>▶잔액확인 및 이용방법, 가맹점문의: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p> <p>▶국민행복카드 발급문의:카드사</p>					
카드사	온 라 인	오프라인																				
BC카드	지마켓, 옥션, 먼슬리싱(앱)	홈플러스(익스프레스포함), 노브랜드, 이마트트레이더스, CU편의점, PK마켓																				
삼성카드	삼성카드쇼핑몰	GS25편의점,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롯데카드	올마이쇼핑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포함),롯데마트,VIC마켓, CU편의점, 농협하나로마트, GS25편의점																				
12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p>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 부모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서비스 제공</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유형</th> <th rowspan="2">소득기준 (중위소득)</th> <th colspan="2">단가(원/시간)</th> <th rowspan="2">비고(4주 부담금) *4주8회, 16시간기준</th> </tr> <tr> <th>정부지원</th> <th>본인부담</th> </tr> </thead> <tbody> <tr> <td>가형</td> <td>150%이하</td> <td>13,620원</td> <td>무상</td> <td>무상</td> </tr> <tr> <td>나형</td> <td>150%초과</td> <td>9,540원</td> <td>4,080원</td> <td>65,280원</td> </tr> </tbody> </table>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단가(원/시간)		비고(4주 부담금) *4주8회, 16시간기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150%이하	13,620원	무상	무상	나형	150%초과	9,540원	4,080원	65,280원	<p>▶자녀생활서비스 : 만3세~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자녀</p> <p>▶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p> <p>▶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1회 지원 (총3회, 임신 중~만12세)</p>	<p>▶사회보장급여신청서</p> <p>▶가족관계 증명서</p> <p>▶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p> <p>※기본증명서(국적취득으로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p>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단가(원/시간)			비고(4주 부담금) *4주8회, 16시간기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150%이하	13,620원	무상	무상																		
나형	150%초과	9,540원	4,080원	65,280원																		